

 <b>보건복지부</b>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0. 3. 17. / (총 3매)	담당부서	보육기반과
과 장	김 우 중	전 화	044-202-3580
담 당 자	오 성 일 / 위 지 원		044-202-3581 / 3593

##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월 22일(일)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(일)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.
  -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,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,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.
    -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“사회적 거리두기”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.
-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.
  -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, 보육시간은 종일보육(7:30~19:30)으로 하며, 급·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.
  -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·도별 콜센터, 시·군·구 보육 담당 부서, 어린이집 이용불편·부정신고센터(1670-2082)에 신고할 수 있고,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.

□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

○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(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등)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,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여,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보육실 교재·교구, 체온계, 의자 등을 이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, 자주 접촉하는 현관·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, 계단 난간,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.

○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,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.

○ 또한,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\*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한다.

\*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마스크,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(65.6억 원, 국비+지방비)기 지원

□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.

○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(최대 10일)\*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.

\*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,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(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)을 5일 이내(한부모는 10일) 동안 지원 (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, 고용노동부)

○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, 상호 놀이,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, 가정 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.

\*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<http://central.childcare.go.kr>) > 공지사항,  
아이사랑포털(<http://www.childcare.go.kr>) > 공지사항에서 활용 가능

## 참고 긴급보육 현황 및 계획

### □ 현재 상황

- 어린이집 현원 대비 23.2%가 긴급보육 이용 중(3.16. 현재)으로,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속 상승 중

\* 10.0%(2.27.) → 11.6%(3.4.) → 17.5%(3.9.) → 19.7%(3.12.) → 23.2%(3.16.)

### □ 긴급보육 관련 계획

- (이용 관련 사항)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, 종일보육(7:30~19:30)하며, 급·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
- (방역관리) 등원중단·업무배제, 발열체크, 외부인 출입제한,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 등 지속 시행
- (긴급보육 회피 등 신고)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 미실시, 급간식 미제공, 가정보육 유도 어린이집 등은 시·도별 콜센터, 시·군·구 보육 담당 부서, 어린이집 이용불편·부정신고센터(1670-2082) 신고 대상

\* 긴급보육 회피 등의 경우, 영유아보육법(제44·45조), 시행규칙(별표 9)에 따라 시정명령(1차), 운영정지(2차 1개월, 3차 3개월, 4차 6개월) 처분

### □ 부모돌봄 지원

- (부모돌봄 지원제도)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\* 사용 가능,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

\*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,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(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)을 5일 이내(한부모는 10일) 동안 지원(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,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)

- (온라인 콘텐츠 제공) 아이-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부모교육, 상호 놀이, 아동 안전 등 관련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

\*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<http://central.childcare.go.kr>) > 공지사항, 아이사랑포털(<http://www.childcare.go.kr>) > 공지사항에서 활용 가능